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유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① 영 제53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목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3제2항 관련)”를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4제2항 관련)”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제12조의4제1항·제84조의2제2항·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0조의2제2항·제53조제2항”을 “제12조의4제1항·제84조의2제2항·제89조제3항·제89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0조의2제2항·제53조제2항·제53조의3제1항”으로, 같은 서식 중 “시행규칙 제8조·제28조의2·제28조의3”을 “시행규칙 제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로,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에”를 “별지 제35호서식, 별지제36호서식 또는 별지제36호의2서식에”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

(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4제2항 관련)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소득·재산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¹⁾						
소득 사항	보훈급여금 등 (간호·조정수당 제외)		담당 공무원 기재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이자소득	자산 조회결과 적용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 원	()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자산 조회결과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	원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자산 조회결과 적용		토지	자산 조회결과 적용
		선박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임목재산	자산 조회결과 적용
항공기		자산 조회결과 적용		어업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차량명(), 용도 [] 생업용 [] 보철용 [] 자가용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백만원), 상가보증금(백만원), 기타(백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동산		소(마리, 원), 돼지(마리, 원)	분양권		원	
	기타가축(마리, 원), 종묘(원)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기구류(원), 기타(원)	회원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제84조의2제2항·제89조제3항·제89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0조의2제2항·제53조제2항·제5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제36호서식 또는 별지제36호의2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6산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대상 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그 밖의 희생자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인 (신청인 및 부양 의무자)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 부동의 시 우편통보(주소·전화번호 작성)	
					서명 또는 인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정보제공 목적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제12조의5·제84조의2제2항·제89조 제3항·제89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0조의2제2항·제53조제2항·제5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뒤쪽 참조
- 정보제공 목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금융회사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유의사항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보훈번호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부양의무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 여부
			-		
			-		
			-		
			-		
			-		
			-		
			-		
			-		
신청내용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1)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4. 사업자등록증명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5. 임대사업자등록증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6. 휴업사실증명
	4. 장애인증명서	17. 폐업사실증명
	5. 임야대장	18. 소득금액증명
	6. 토지대장	19. 납세사실증명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0. 납세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9. 건축물대장	22. 공무원연금내역서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1. 주택가격확인서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2. 선박원부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3.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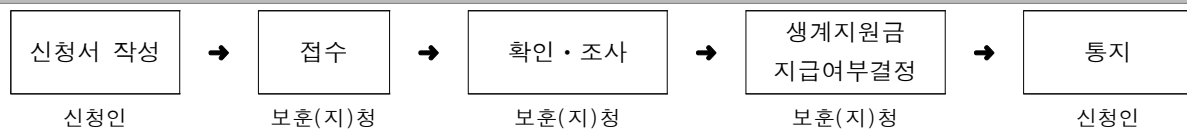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4(생계지원금 지급 신청)</u> ① 영 제53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